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

경상북도의회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

2018년도 정/기/총/회/회/의/자/료

- 일시_2018. 10. 15.(월) 10:00
- 장소_도의회 세미나실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목차

PART1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2018년도 정기총회 개최 계획

- ▶ 행사 개요 / 7
- ▶ 시간 계획 / 7

PART2 주요 안건

안건1 2019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 / 11

- ▶ 공동주택정책연구회 / 17
- ▶ 문화관광일자리연구회 / 29
- ▶ 실버정책연구회 / 41
- ▶ 지구촌새마을연구회 / 53
- ▶ 친환경에너지연구회 / 65

안건2 2019년도 정책연구위원회 예산집행계획 보고 / 77

PART3 불임

불임1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경과 / 81

불임2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제7기) 위원 명단 / 83

불임3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84

불임4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89

경상북도의회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 2018년도 정기총회 개최 계획



경상북도의회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 2018년도 정기총회 개최 계획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의거 정책연구위원회 정기총회에서 개최하여 현안사항 심의 및 2019년도 주요활동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고자 함.

행사 개요

- 일 시 : 2018. 10. 15(월) 10:00
- 장 소 : 도의회 세미나실
- 참석대상 : 30명 정도
 - ※ 의장,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의원연구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
- 주요안건
 - 2019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
 - 2019년도 정책연구위원회 예산집행계획 보고

시간 계획

구 분	시 간	분	내 용	
'18.10.15 (월)	10:00		개 회	
	10:00~10:02	2	국민의례	
	10:02~10:07	5	개 회 사	조현일 위원장
	10:07~10:12	5	격 려 사	의장
	10:12~10:15	3	안전설명	김준열 부위원장
	10:15~10:25	10	연구단체별 설명	각 연구단체 대표
	10:25~10:50	25	안전심의	
	10:50		폐 회	

● 주요 안건 ●

안건1 2019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

안건2 2019년도 정책연구위원회 예산집행계획 보고



2019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등록 신청하고, 그 연구활동계획서를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연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심의하여 의장에게 보고(승인)하고 최종결과를 통보

Ⅰ 심의근거 Ⅰ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8조 내지 제12조
 - 구성요건 : 의원 10명 이상(정책연구위원 2명 이상 포함), 외부전문가 1명
 - ※ 의원연구단체는 조례에 의거한 등록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음
 - ※ 각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음

Ⅰ 심의회 운영 Ⅰ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연구단체대표 참여하에 심의
 - ※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에 관한 심의는 정책연구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명시(조례 제10조 및 제12조)

Ⅰ 심의회 심사방법 Ⅰ

- 심의자료 배부 및 심사위원에게 신청내용을 설명한 후, 정책연구위원 개별 심의 방법 채택

Ⅰ 심의대상 : 5개 단체 Ⅰ

- 공동주택정책연구회 : 대표 김준열, 회원 수 10명(정책위원 4명)
- 문화관광일자리연구회 : 대표 조주홍, 회원 수 11명(정책위원 5명)
- 실버정책연구회 : 대표 황병직, 회원 수 11명(정책위원 2명)
- 지구촌새마을연구회 : 대표 안희영, 회원 수 10명(정책위원 2명)
- 친환경에너지연구회 : 대표 김영선, 회원 수 10명(정책위원 2명)
 - ※ 연구활동계획서 및 검토내역 : 붙임

| 대상 심의기준 |

〈의결정족수 – 조례 제7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심의회 개의
- 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토록 함.
-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음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심사는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의 적정성과 연구활동계획의 타당성 여부만 심의기준에 의거 심의 의결
 - ※ 위원별 심의 내역서의 심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 처리

| 심의 주요 착안사항 |

- 의원연구단체 구성(조례 제8조 및 제9조)
 -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2명 이상 포함 여부
 - 의원 10명 이상 구성 여부
 - 중복 가입 여부(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 가능)
 - 단체대표 선정 여부
 - 연구취지에 적합한 단체명칭 부여 등
- 연구활동계획서 제출(조례 제12조)
 - 연구주제의 적합성 및 활동계획 수립의 타당성 여부
 - 연구활동비 사용계획(1개 단체 4,500천원) 및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 향후 연구활동 추진일정의 실현성 등

2019년도 의원연구단체 심의대상

○ 심의대상 : 5개 단체, 52명(도의원 52, 외부전문가 -)

단체명	회원수 (명)	대 표	연구활동 주요내용	연구활동비 (신청액)	외부 전문가	소속 및 직위	비고
공동주택정책 연구회	10명	김준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사회적 갈등문제 해결과 이용주민의 안전복지 향상 도모	4,500,000원	-	-	
문화관광 일자리연구회	11명	조주홍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관광 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연구	4,500,000원	-	-	
실버정책 연구회	11명	황병직	고령화시대 노인(실버)복지정책에 대해 재조명 해 보고 관련 실버산업의 전망과 도의회 차원의 발 전방향 로드맵 제시	4,500,000원	-	-	
지구촌새마을 연구회	10명	안희영	새마을세계화사업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와 주어진 여건과 기회들에 대한 실천 가능 한 정책개발과 방향 제시	4,500,000원	-	-	
친환경에너지 연구회	10명	김영선	친환경에너지 관련 신산업 집중 육성방안과 경복에 맞는 친환경에너지지원 적극 발굴	4,500,000원	-	-	

※ 연구단체 순서는 가나다순이며, 연구단체별 외부전문가는 정기총회 후 추후 위촉 예정임

2019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

- 공동주택정책연구회
- 문화관광일자리연구회
- 실버정책연구회
- 지구촌새마을연구회
- 친환경에너지연구회



공동주택정책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 신청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취소)을 신청합니다.

1. 단체의 명칭 : 「공동주택정책 연구회」

2.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비 고
김 준 열	농수산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

3. 회원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본인 확인	비 고
김 득 환	기획경제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정 세 현	교육위원회		정책연구위원
박 태 춘	교육위원회		
이 재 도	교육위원회		
김 성 진	농수산위원회		
김 대 일	기획경제위원회		
임 무 석	농수산위원회		
박 미 경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윤 창 욱	건설소방위원회		

2018 년 10 월 일

[신청인] 연구단체 대표 김 준 열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2019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신청 현황

연구회명	연구주제	대표자 (소속)	회원수(명)			도 의 원(10명)						정책 연구 위원 (4명)
			계	외 부 전문가	도의원	기획 경제	행정 보건 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공동주택 정책 연구회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연구	김준열 (농수산)	10	추후 위촉	10	김득환 김대일	박미경	-	김준열 김성진 임무석	윤창욱	정세현 박태춘 이재도	김준열 김득환 정세현 박미경

※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신청 현황은 제출된 등록신청서를 기준으로 작성함

이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검토 내용

연구회명	연구주제	신청서 대표자 (소속)	회원 수 (명)	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서			비고
				신청내역	조례기준 (제8조 제2항)	검토	제출내역	조례기준 (제12조제1항)	검토	
공동주택 정책연구회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연구	김준열 (농수산)	10	- 도의원 : 10명 - 정책연구위원 4명 - 외부 전문가 추후 위촉	10명 이상 의원 참여 2명 이상 정책위원	적 정	- 연구과제 - 공동주택 정책연구 -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 4,500천원	매 10월 말 까지 제출	적 정	

※ 제8조 제2항 : 연구단체는 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10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각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 제12조 제1항 : 연구단체는 매 연도 10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연구활동계획서와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년도 연구활동계획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단체의 명칭		공동주택정책연구회
연구 내용	연구주제	공동주택 정책연구
	연구목적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연구 활동비	총 액	금4,500,000원(금사백오십만원)
	산출내역	(세부 산출내역 붙임) ※ 자료수집비, 인쇄비, 강사료, 회의비, 세미나비, 물품구입비, 전문가 자문경비 등
특기사항		없음

2018 년 10 월 일

[제출인] 연구단체 대표 김 준 열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

구 분	주 요 내 용	
연구단체명	공동주택정책연구회	
과 제 명	공동주택 정책연구	
연구 목적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연구경비 신청내역	총 액	금4,500,000원(금사백오십만원)
	세 부 산출내역	「세부 산출내역 붙임」 ※ 자료수집비, 인쇄비, 강사료, 회의비, 세미나비, 물품구입비, 전문가 자문경비 등

붙임 : 연구활동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활동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8 년 10 월 일

[제출인] 연구단체 대표 김 준 열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연구활동계획서
공동주택정책연구회

「공동주택정책연구회」
연구활동 세부추진계획(안)

제출자 : 공동주택정책연구회 대표 김 준 열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 과제 : 「공동주택 정책연구」

□ 주제 :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 연구의 필요성

- 공동주택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는 건설 못지않게 중요하며, 경상북도 차원에서 이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또 어떻게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현재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는 2015년에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과 이에 근거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나, 현실에선 관리업무의 비효율성, 입주자 등의 무관심 및 입주자대표·관리주체의 부도덕성, 갈등·불신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정책적 연구를 통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갈등요소들을 제거하여 사회적 갈등 해결에 투입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최근 연이어 발생한 포항·경주지진,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에 대해 노후화 등으로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공동주택이 많아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연구로 철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임

□ 연구의 목적

- 공동주택관리체제와 현황(실태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 경상북도 차원의 정책적 기본방향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각종 현안에 대한 문제분석을 통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대립·갈등을 해소 또는 최소화하고자 함
-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공동주택관리정책을 재조명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정책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 아울러, 공동주택이 가진 구조적·내재적 취약점 등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연이은 각종 자연재해(지진, 태풍 등)에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공동주택관리정책과 관련한 현행 법제도 등의 조사 연구
- 그 동안 추진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각종 정책을 재검토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과 로드맵 제시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국내외 대표적 우수사례와 실패사례에 대한 조사 및 심층 분석
- 지역민의 공감대 확산과 여론형성을 위한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
- 성공적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경상북도에 맞는 정책모델 개발 및 과제시행을 위한 도의회차원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 연구방법

- 연구목표의 정립과 현안과제의 파악
- 국내외 사례조사

- 입주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세미나 공청회 개최
- 문제점 발굴/보완 및 개선방안 마련
- 제도의 개선 및 장치 마련

□ 기대효과

- 민간이 활동의 중심인 공동주택관리정책에서 공공의 차원에서 법적 테두리를 계속 보완하고 새로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소모적 갈등요인을 감소시켜 나갈 것임
-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으로 공동주택 이용주민들의 안전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임
- 아울러,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에 대한 공적 재정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성공적인 공동주택관리 모범 모델로서 역할이 기대됨

□ 소요경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원)

지출항목	산 출 기 초	산출금액	비 고
계		4,500,000	
자료인쇄비	○ 간담회, 토론회 등 자료인쇄 - 15,000원 × 50부 × 2회	1,500,000	
전문가 활용경비	○ 강사수당 : 300,000원 × 2회 ○ 여비 : 400,000원 × 2회	1,400,000	
세미나장 대여	○ 임차료 : 500,000원 × 2회	1,000,000	
기타(현수막 등)	○ 현수막 등 : 300,000원 × 2회	600,000	

※ 세부내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화관광일자리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 신청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취소)을 신청합니다.

1. 단체의 명칭 : 「문화관광 일자리 연구회」

2.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상임위원회	비고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3. 회원 인적사항

성명	소속 상임위원회	본인 확인	비고
조현일	교육위원회		정책연구위원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정책연구위원
배진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정책연구위원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이종열	기획경제위원회		
박영환	기획경제위원회		정책연구위원
박채아	문화환경위원회		정책연구위원
김상헌	건설소방위원회		
나기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용선	교육위원회		

2018 년 10 월 일

[신청인] 연구단체 대표 조주홍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2019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신청 현황

연구회명	연구주제	대표자 (소속)	회원수(명)			도 의 원(11명)						정책 연구 위원 (5명)
			계	외 부 전문가	도의원	기획 경제	행정 보건 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문화관광 일자리 연구회	문화관광 분야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조주홍 (문화 관광)	11	-	11	도기욱 이종열 박영환	배진석 나기보	조주홍 박채아	-	박정현 김상현	조현일 박용선	조현일 도기욱 배진석 박영환 박채아

※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신청 현황은 제출된 등록신청서를 기준으로 작성함

이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검토 내용

연구회명	연구주제	신청서 대표자 (소속)	회원 수 (명)	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서			비고
				신청내역	조례기준 (제8조 제2항)	검토	제출내역	조례기준 (제12조제1항)	검토	
문화관광 일자리 연구회	문화관광 분야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조주홍 (문화 관광)	11	- 도의원 : 11명 - 정책연구위원 5명 - 외부 전문가 추후 위촉	10명 이상 의원 참여 2명 이상 정책위원	적 정	- 연구과제 - 문화관광산업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연구 -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 4,500천원	매 10월말 까지 제출	적 정	

※ 제8조 제2항 : 연구단체는 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각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 제12조 제1항 : 연구단체는 매 연도 10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연구활동계획서와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년도 연구활동계획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단체의 명칭		문화관광일자리연구회
연구 내용	연구주제	문화관광 일자리 정책연구
	연구목적	문화관광 분야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연구 활동비	총 액	금4,500,000원(금사백오십만원)
	산출내역	(세부 산출내역 붙임) ※ 자료수집비, 인쇄비, 강사료, 회의비, 세미나비, 물품구입비, 전문가 자문경비 등
특기사항		없음

2018 년 10 월 일

[제출인] 연구단체 대표 조 주 홍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

구 분	주 요 내 용	
연구단체명	문화관광일자리연구회	
과 제 명	문화관광 일자리 정책연구	
연구 목적	문화관광 분야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연구경비 신청내역	총 액	금4,500,000원(금사백오십만원)
	세 부 산출내역	「세부 산출내역 붙임」 ※ 자료수집비, 인쇄비, 강사료, 회의비, 세미나비, 물품구입비, 전문가 자문경비 등

붙임 : 연구활동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활동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8 년 10 월 일

[제출인] 연구단체 대표 조 주 홍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연구활동계획서
문화관광일자리연구회

「문화관광일자리연구회」
연구활동 세부추진계획(안)

제출자 : 문화관광일자리연구회 대표 조 주 홍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 과제 : 「문화관광일자리 정책연구」

□ 주제 : 문화관광 분야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연구의 필요성

- 문화의 수도 경상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 풍부한 정신적·물질적 전통문화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를 활용한 문화관광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함
- 도내 문화자원을 근간으로 영화, 게임, 음악,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 분야에서 경북만이 뽑낼 수 있는 ‘Killing 콘텐츠’를 발굴·육성함으로써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방안 모색이 가능함
- 또한 문화관광산업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소규모 자본인력만으로도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이 얼마든지 가능한 블루오션 시장임

□ 연구의 목적

- 독창성과 우수성을 가진 경북의 많은 문화자산을 경쟁력있는 콘텐츠 산업으로 발전시켜 新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도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 문화관광산업을 경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개발·육성
-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문화관광 일자리정책을 재조명하여 새로운 문화관광-일자리 연계 정책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문화관광 분야 비즈니스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필요한 도내 문화자산 현황, 문화산업 관련 법제도 등의 조사연구
- 그동안 추진한 문화관광산업 각종 정책을 재검토하여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대안 제시
- 문화관광 분야 산업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새로운 로드맵 제시
- 국내외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관련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사례조사 및 분석
- 지역민의 공감대 확산과 여론형성을 위한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
- 문화관광분야에서의 소득창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모델 개발 및 과제시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 등

□ 연구방법

- 연구목표의 정립과 현안과제의 파악
- 국내외 사례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세미나 공청회 개최
- 문제점 발굴/보완 및 개선방안 마련
- 제도의 개선 및 장치 마련

□ 기대효과

- 문화관광 분야 산업을 정책적으로 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함
- 문화의 수도 경상북도가 과거형이 아닌 미래형 문화관광 분야 일자리 연계사업의 대표적 정책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 아울러, 문화관광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경북을 만들어가고자 함

□ 소요경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원)

지출항목	산 출 기 초	산출금액	비 고
계		4,500,000	
자료인쇄비	○ 간담회, 토론회 등 자료인쇄 - 15,000원 × 50부 × 2회	1,500,000	
전문가 활용경비	○ 강사수당 : 300,000원 × 2회 ○ 여비 : 400,000원 × 2회	1,400,000	
세미나장 대여	○ 임차료 : 500,000원 × 2회	1,000,000	
기타(현수막 등)	○ 현수막 등 : 300,000원 × 2회	600,000	

※ 세부내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실버정책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 신청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취소)을 신청합니다.

1. 단체의 명칭 : 「실버정책 연구회」

2.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비 고
황 병 직	기획경제위원회	

3. 회원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본인 확인	비 고
김 진 욱	건설소방위원회		정책연구위원
김 종 영	문화환경위원회		정책연구위원
김 봉 교	문화환경위원회		
남 용 대	건설소방위원회		
박 창 석	농수산위원회		
방 유 봉	농수산위원회		
윤 승 오	기획경제위원회		
곽 경 호	교육위원회		
이 칠 구	기획경제위원회		
김 하 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18 년 10 월 일

[신청인] 연구단체 대표 황 병 직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2019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신청 현황

연구회명	연구주제	대표자 (소속)	회원수(명)			도 의 원(10명)						정책 연구 위원 (2명)
			계	외 부 전문가	도의원	기획 경제	행정 보건 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실버정책 연구회	고령화시대 노인복지 정책 및 실버산업에 대한 정책연구	황병직 (기획 경제)	11	추후 위촉	11	황병직 윤승오 이철구	김하수	김종영 김봉교	박창석 방유봉	김진욱 남용대	곽정호	김진욱 김종영

※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신청 현황은 제출된 등록신청서를 기준으로 작성함

이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검토 내용

연구회명	연구주제	신청서 대표자 (소속)	회원 수 (명)	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서			비고
				신청내역	조례기준 (제8조 제2항)	검토	제출내역	조례기준 (제12조제1항)	검토	
실버정책 연구회	고령화시대 노인복지 정책 및 실버산업에 대한 정책연구	황병직 (기획 경제)	11	○ 도의원 : 11명 - 정책연구위원 2명 ○ 외부 전문가 추후 위촉	10명이상 의원참여	적 정	○ 연구과제 - 노인복지정책연구 - 실버산업 정책연구 ○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 4,500천원	매 10월말 까지 제출	적 정	

※ 제8조 제2항 : 연구단체는 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각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 제12조 제1항 : 연구단체는 매 연도 10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연구활동계획서와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년도 연구활동계획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단체의 명칭		실버정책연구회
연구 내용	연구주제	실버정책연구
	연구목적	고령화시대 노인(실버)계층 지원에 대한 정책연구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연구 활동비	총 액	금4,500,000원(금사백오십만원)
	산출내역	(세부 산출내역 불임) ※ 자료수집비, 인쇄비, 강사료, 회의비, 세미나비, 물품구입비, 전문가 자문경비 등
특기사항		

2018 년 10 월 일

[제출인] 연구단체 대표 황 병 직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

구 분	주 요 내 용	
연구단체명	실버정책연구회	
과 제 명	노인(실버)복지 정책연구	
연 구 목 적	고령화시대 노인(실버)계층 지원에 대한 정책연구	
연구경비 신청내역	총 액	금4,500,000원(금사백오십만원)
	세 부 산출내역	「세부 산출내역 붙임」 ※ 자료수집비, 인쇄비, 강사료, 회의비, 세미나비, 물품구입비, 전문가 자문경비 등

붙임 : 연구활동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활동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8 년 10 월 일

[제출인] 연구단체 대표 황 병 직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실버정책연구회」

연구활동 세부추진계획(안)

제출자 : 실버정책연구회 대표 황 병 직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 과제 : 「실버정책연구」

□ 주제 : 고령화시대 노인(실버)계층 지원에 대한 정책연구

□ 연구의 필요성

- 경상북도는 노인인구비율이 높아 초고령사회 진입이 임박한 현실
이므로 노인복지에 대한 선도적 대응이 필요함
 - ※ 의성·군위·영양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예천·봉화·청송·영덕·청송 등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임박
-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인부양비와 연금·의료·장기요양 등 노인복지비용 급증으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저임금 근로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인 빈곤문제와 효 문화사상 변화로 노인부부, 노인독거가구 문제의 심각성 대두
- 노인복지는 더 이상 국가차원의 정책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지자체별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개발과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함
- 시지역보다 군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군 간 정책 및 서비스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 노인복지 정책의 핵심은 단순 서비스 제공보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자립이 필요함
- 더 나아가 관련 실버산업 육성을 통한 각종 일자리 창출과 그에 따른 지역소득 창출이 필요할 것임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정책의 대상자인 현 노인층과 미래세대 노인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인복지정책 개발에 있음
- 향후 노인복지정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노인의 삶의 질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지향해야 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관련 실버산업들의 현황과 전망을 통해 경상북도에 적용 가능한 정책대안 개발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그 동안 추진해온 경상북도 노인복지정책들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개선의지와 확고한 철학을 담은 정책 비전 제시
- 전문가를 활용하여 경북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및 관련 실버산업 정책대안 개발을 위한 의안을 발굴·조사·연구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
- 국내외 노인복지정책 및 실버산업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경상북도 노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제도 및 개선사항 제시
- 수요자 중심의 노인복지정책의 개발 및 중장기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 모색
- 지역주민 및 대상자(노인)들의 정책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연구방법

- 연구목표의 정립과 현안과제의 파악
- 국내외 사례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세미나 공청회 개최

- 문제점 발굴/보완 및 개선방안 마련
- 제도의 개선 및 장치 마련

□ 기대효과

- 고령사회를 맞아 경상북도의 노인복지정책을 재조명하고 앞으로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통해 중·장기개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 향후 도정 발전에 기여
- 노인복지의 현황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노인복지문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지속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 향후 조례 제·개정 등 법령과 제도 개선을 통해 경북 도의회 차원에서 경상북도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
- 각종 사례조사 분석을 통한 실버산업 분야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선도하여 또 하나의 소득 창출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 소요경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원)

지출항목	산 출 기 초	산출금액	비 고
계		4,500,000	
자료인쇄비	○ 간담회, 토론회 등 자료인쇄 - 15,000원 × 50부 × 2회	1,500,000	
전문가 활용경비	○ 강사수당 : 300,000원 × 2회 ○ 여비 : 400,000원 × 2회	1,400,000	
세미나장 대여	○ 임차료 : 500,000원 × 2회	1,000,000	
기타(현수막 등)	○ 현수막 등 : 300,000원 × 2회	600,000	

※ 세부내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구촌새마을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 신청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취소)을 신청합니다.

1. 단체의 명칭 : 「지구촌새마을 연구회」

2.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비 고
안 희 영	농수산위원회	

3. 회원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본인 확인	비 고
박 권 현	기획경제위원회		
한 창 화	농수산위원회		
박 영 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남 진 복	기획경제위원회		
이 춘 우	농수산위원회		정책연구위원
김 상 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신 효 광	농수산위원회		
남 영 숙	농수산위원회		
이 선 희	문화환경위원회		

2018 년 10 월 일

[신청인] 연구단체 대표 안 희 영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2019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신청 현황

연구회명	연구주제	대표자 (소속)	회원수(명)			도 의 원(10명)						정책 연구 위원 (2명)
			계	외 부 전문가	도의원	기획 경제	행정 보건 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지구촌 새마을 연구회	경상북도 새마을 운동 세계화를 위한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안희영 (농수산)	10	추후 위촉	10	박권현 남진복	박영서 김상조	이선희	안희영 한창화 이춘우 신효광 남영숙	-	-	이춘우 김상조

※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신청 현황은 제출된 등록신청서를 기준으로 작성함

이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검토 내용

연구회명	연구주제	신청서 대표자 (소속)	회원 수 (명)	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서			비고
				신청내역	조례기준 (제8조 제2항)	검토	제출내역	조례기준 (제12조제1항)	검토	
지구촌 새마을 연구회	경상북도 새마을 운동 세계화를 위한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안희영 (농수산)	10	- 도의원 : 10명 - 정책연구위원 2명 - 외부 전문가 추후 위촉	10명이상 의원참여 2명이상 정책위원	적 정	- 연구과제 - 지구촌새마을 정책연구 -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 4,500천원	매 10월 말 까지 제출	적 정	

※ 제8조 제2항 : 연구단체는 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10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각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 제12조 제1항 : 연구단체는 매 연도 10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연구활동계획서와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년도 연구활동계획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단체의 명칭		지구촌새마을연구회
연구 내용	연구주제	지구촌새마을 정책연구
	연구목적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연구 활동비	총 액	금4,500,000원(금사백오십만원)
	산출내역	(세부 산출내역 붙임) ※ 자료수집비, 인쇄비, 강사료, 회의비, 세미나비, 물품구입비, 전문가 자문경비 등
특기사항		없음

2018 년 10 월 일

[제출인] 연구단체 대표 안 희 영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붙임4-4_지구촌새마을연구회〉

[별지 제5호 서식]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

구 분	주 요 내 용	
연구단체명	지구촌새마을연구회	
과 제 명	지구촌새마을 정책연구	
연구 목적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경비 신청내역	총 액	금4,500,000원(금사백오십만원)
	세 부 산출내역	「세부 산출내역 붙임」 ※ 자료수집비, 인쇄비, 강사료, 회의비, 세미나비, 물품구입비, 전문가 자문경비 등

붙임 : 연구활동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활동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8 년 10 월 일

[제출인] 연구단체 대표 안 희 영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연구활동계획서
지구촌새마을연구회

「지구촌새마을연구회」
연구활동 세부추진계획(안)

제출자 : 지구촌새마을연구회 대표 안 희 영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 과제 : 「지구촌새마을 정책연구」

□ 주제 :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위한 발전방안

□ 연구의 필요성

-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운동으로서 대한민국의 농촌 근대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함
-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의 종주도로서 주도적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시범마을 조성, 봉사단 파견, 새마을 연수, 새마을연구소 운영 등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추진하고 있음
-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제적 관심 고조(유엔이 선정한 세계적으로 성공한 지역사회개발 모델 선정, 2013년 새마을운동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신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모델로 추진)로 경북의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대한 지속가능한 중장기 미래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경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앞으로 나아갈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새마을운동이 1위로 ‘대한 50년, 우리 국민이 성취한 가장 큰 업적’에 선정되는 등 새마을운동은 줄곧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에 대해 심층 연구·분석하여 이를 통해 나타난 문제와 주어진 여건과 기회들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실천 가능한 정책개발과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경북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그 동안 추진해온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개선의지와 확고한 철학을 담은 정책 비전 제시
- 전문가를 활용하여 새마을운동 세계화 정책대안 개발을 위한 의안을 발굴·조사·연구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
- 글로벌 새마을운동을 비교·분석하여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사항 제시
-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통한 글로벌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 모색
- 최근 준공된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의 운영 관련 문제점 분석 및 향후 관리·활용방안 등 모색을 위한 논의

□ 연구방법

- 연구목표의 정립과 현안과제의 파악
- 국내외 사례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세미나 공청회 개최
- 문제점 발굴/보완 및 개선방안 마련
- 제도의 개선 및 장치 마련

□ 기대효과

- 경상북도의 새마을운동 세계화 분야를 정책 연구를 통한 중·장기 개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
- 국제 정세의 흐름과 개발도상국 수요에 부응하는 새마을 운동 세계화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경북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및 국격 제고에 기여
- 조례 제·개정 등 법령과 제도 개선을 통해 경북 도의회 차원에서 글로벌 새마을운동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함

□ 소요경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원)

지출항목	산 출 기 초	산출금액	비 고
계		4,500,000	
자료인쇄비	○ 간담회, 토론회 등 자료인쇄 - 15,000원 × 50부 × 2회	1,500,000	
전문가 활용경비	○ 강사수당 : 300,000원 × 2회 ○ 여비 : 400,000원 × 2회	1,400,000	
세미나장 대여	○ 임차료 : 500,000원 × 2회	1,000,000	
기타(현수막 등)	○ 현수막 등 : 300,000원 × 2회	600,000	

※ 세부내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친환경에너지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 신청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취소)을 신청합니다.

1. 단체의 명칭 : 「친환경에너지 연구회」
2.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비 고
김 영 선	문화환경위원회	정책연구위원

3. 회원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본인 확인	비 고
박 차 양	문화환경위원회		
박 판 수	문화환경위원회		
정 영 길	건설소방위원회		
임 미 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 시 환	건설소방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오 세 혁	건설소방위원회		
김 희 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홍 정 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고 우 현	교육위원회		

2018 년 10 월 일

[신청인] 연구단체 대표 김 영 선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2019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신청 현황

연구회명	연구주제	대표자 (소속)	회원수(명)			도 의 원(10명)						정책 연구 위원 (2명)
			계	외 부 전문가	도의원	기획 경제	행정 보건 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친환경 에너지 연구회	경상북도 미래 친환경에너지 자원발굴을 위한 정책연구	김영선 (문화 관광)	10	-	10	-	임미애 김희수 홍정근	김영선 박차양 박판수	-	정영길 김시환 오세혁	고우현	김영선 김시환

※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신청 현황은 제출된 등록신청서를 기준으로 작성함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검토 내용

연구회명	연구주제	신청서 대표자 (소속)	회원 수 (명)	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서			비고
				신청내역	조례기준 (제8조 제2항)	검토	제출내역	조례기준 (제12조제1항)	검토	
친환경 에너지 연구회	경상북도 미래 친환경에너지 자원발굴을 위한 정책연구	김영선 (문화 관광)	10	- 도의원 : 10명 - 정책연구위원 2명 - 외부 전문가 추후 위촉	10명이상 의원참여 2명이상 정책위원	적 정	- 연구과제 - 친환경에너지 분야 정책연구를 통한 대안 발굴 -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 4,500천원	매 연도 10월말까지 제출	적 정	

※ 제8조 제2항 : 연구단체는 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각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 제12조 제1항 : 연구단체는 매 연도 10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연구활동계획서와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5-3_친환경에너지연구회〉

[별지 제4호 서식]

2019년도 연구활동계획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단체의 명칭		친환경에너지연구회
연구 내용	연구주제	친환경에너지 정책연구
	연구목적	경북 맞춤형 지속가능 미래 친환경 에너지 자원 발굴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연구 활동비	총 액	금4,500,000원(금사백오십만원)
	산출내역	(세부 산출내역 붙임) ※ 자료수집비, 인쇄비, 강사료, 회의비, 세미나장 대여, 물품구입비, 전문가 자문경비 등
특기사항		없음

2018 년 10 월 일

[제출인] 연구단체 대표 김 영 선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붙임5-4_친환경에너지연구회〉

[별지 제5호 서식]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

구 분	주 요 내 용	
연구단체명	친환경에너지연구회	
과 제 명	친환경에너지 정책연구	
연구 목적	경북 맞춤형 지속가능 미래 친환경 에너지 자원 발굴	
연구경비 신청내역	총 액	금4,500,000원(금사백오십만원)
	세 부 산출내역	「세부 산출내역 붙임」 ※ 자료수집비, 인쇄비, 강사료, 회의비, 세미나비, 물품구입비, 전문가 자문경비 등

붙임 : 연구활동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활동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8 년 10 월 일

[제출인] 연구단체 대표 김 영 선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연구활동계획서
친환경에너지연구회

「친환경에너지연구회」
연구활동 세부추진계획(안)

제출자 : 친환경에너지연구회 대표 김 영 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 과제 : 「친환경에너지 정책연구」

□ 주제 : 경북 맞춤형 지속가능 미래 친환경 에너지 자원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

□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경상북도 차원의 선도적인 에너지 혁신전략 마련 시급
- 기존 주 에너지자원인 광물자원(석유, 석탄 등)의 매장량 한계와 대량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파괴) 문제 대두
- 계속되는 고유가시대 수입물가상승으로 지역 수출경기 침체 지속

□ 연구의 목적

-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혁신 성장 동력의 원천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관련 新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도모
- 이와 함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대형 국가시책사업 경상북도 우선 유치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연구
- 정부 탈원전정책의 실질적 장·단점 분석을 통한 향후 경상북도차원의 적극적 대응논리 연구

- 친환경에너지 현주소를 면밀히 심층 분석하여 경북 맞춤형 친환경 에너지 자원 적극 발굴을 목적

□ 주요 연구내용

- 도 관련 부서와 함께 현 정부 에너지 관련 정책 분석·회의 진행
- 지속가능하고 우리 도에 적합한 친환경에너지 산업 발굴을 위한 국내외 사례조사 실시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개최
- 친환경에너지 분야 선도적 우수 지자체 및 기업 등 현장방문
- 지역민의 공감대 확산과 여론형성을 위한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

□ 연구방법

- 연구목표의 정립과 현안과제의 파악
- 국내외 사례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세미나 공청회 개최
- 문제점 발굴/보완 및 개선방안 마련
- 제도의 개선 및 장치 마련

□ 기대효과

- 친환경에너지 관련 산업을 정책적으로 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함
- 지역민들에게 미래 친환경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나아가 기존 에너지정책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소요경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원)

지출항목	산 출 기 초	산출금액	비 고
계		4,500,000	
자료인쇄비	○ 간담회, 토론회 등 자료인쇄 - 15,000원 × 50부 × 2회	1,500,000	
전문가 활용경비	○ 강사수당 : 300,000원 × 2회 ○ 여비 : 400,000원 × 2회	1,400,000	
세미나장 대여	○ 임차료 : 500,000원 × 2회	1,000,000	
기타(현수막 등)	○ 현수막 등 : 300,000원 × 2회	600,000	

※ 세부내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19년도 주요 사업예산 | 【46,500천원】

- 정책연구위원회 연구활동비 : 20,000천원
-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단체별 4,500) : 22,500천원
- 정책연구과제 자료집 발간·유인 등 : 4,000천원

| 입법정책연구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

- 개최시기 : 2018년 연중
- 장 소 : 추후 선정
- 참석대상 : 도의원, 외부 토론초청인사, 정책부서 담당자 등
- 주요과제 : 입법정책에 필요한 사항 주제발표 및 토론 등

| 입법정책연구 워크숍 개최 |

- 개최시기 : 2018년 연중
- 장 소 : 추후 선정
- 참석대상 : 정책연구위원, 외부전문가, 정책부서 담당자 등
- 주요과제 : 입법정책에 필요한 사항 주제발표 및 토론 등

| 정책연구위원회 2019년도 정기총회 개최 |

- 개최시기 : 2018. 12월경
- 장 소 : 추후 선정
- 참 석 자 :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 주요안건 : 의원연구단체 등록, 연구계획 심사 승인 등

| 기타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논의 |

● 불 임 ●

- 불임1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경과
- 불임2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7기) 위원
- 불임3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불임4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경과

'06. 8. 1.	의정연구회 발족
'07. 7. 20.	의정연구회 세미나 개최 - 의회사무처 입법정책지원조직 강화 필요성 제기
'08. 3. 13.	의정연구회 세미나 개최 - 의정연구위원회 도입방안 검토
'08. 3. 17.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발의 - 김수용 의원 외 20인
'08. 5. 29.	동 조례안 제22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08. 6. 18.	동 조례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 재의요구
'08. 6. 30.	제224회 정례회 본회의시 동 조례안 수정안 가결
'08. 9. 8.	경상북도의회 제1기 의정연구위원회 출범
'09. 4. 26.	동 조례안 일부 개정, 의정연구위원회를 정책연구위원회로 개칭
'09. 9. 8.	정책연구위원회 제2기 위원회 출범 및 정기총회 개최
'10. 10. 25.	정책연구사례집 발간
'10. 11. 15.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정책연구위원회 제3기 위원회 출범 및 정기총회 개최
'11. 3. 30.	입법정책 세미나 개최 - 정책연구위원회 운영방향 토론
'12. 2. 8.	2011년도 정기총회 및 워크숍 개최
'12. 10. 4.	정책연구위원회 제4기 위원회 출범
'12. 12. 5.	2012년도 정책연구결과 보고서 발간
'13. 2. 1.	신도청시대 경북의 발전과제와 의정활동방향 워크숍
'13. 3. 27.	과제연구활동 발표 연찬회
'13. 6. 27.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지역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간담회

'13. 9. 25.	지방의회 인사권 및 의원보좌관제도 현황과 방향에 대한 워크숍
'13. 9. 27.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우수 의원연구단체 시상제도 도입 등)
'13. 10. 24.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13. 11. 22.	2013년도 정책연구결과 보고서 발간
'13. 12. 9.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정기총회
'14. 6.	2014년도 정책연구결과 보고서 발간
'14. 8. 25.	정책연구위원회 제5기 위원회 출범
'14. 8. 28.	지방의회 혁신과 변화 대토론회(영남대학교)
'14. 11. 6.	의회제도개혁 토론회(EXCO)
'15. 3. 16.	정책연구위원회 「의정활동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15. 10. 21.	2015년 정책연구위원회 워크숍 개최
'15. 12.	2015년도 정책연구결과 보고서 발간
'15. 12. 11.	2015년도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정기총회
'16. 4. 19.	2016년 정책연구위원회 워크숍 개최
'16. 5. 3.	경상북도의회 신청사 이전 기념 지방자치발전 대토론회 개최
'16. 8. 25.	정책연구위원회 제6기 위원회 출범
'16. 10. 6.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대안」 세미나 개최
'16. 12. 16.	2016년도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정기총회
'16. 12.	2016년도 정책연구결과 보고서 발간
'17. 2. 23.	2017년 정책연구위원회 상반기 워크숍 개최
'17. 12. 15.	2017년도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정기총회
'17. 12.	2017년도 정책연구결과 보고서 발간
'18. 8.	제10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결과 보고서 발간
'18. 9. 13.	정책연구위원회 제7기 위원회 출범
'18. 10. 15.	2018년도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정기총회

〈붙임 2〉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제7기)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연 락 처	비 고 (E-mail)
계	15명			
위 원 장	조 현 일	교육위원회	010-3817-1720	choh1720@naver.com
부위원장	김 준 열	농수산위원회	010-7777-9171	hwarangnara@naver.com
위 원	김 득 환	기획경제위원회	010-3795-7849	kimduc8965@hanmail.net
	김 상 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010-3819-9588	kim9492@hanmail.net
	김 시 환	건설소방위원회	010-2802-5367	sihwan_kim@naver.com
	김 영 선	문화환경위원회	010-2289-0839	toryfood@hanmail.net
	김 종 영	문화환경위원회	010-9373-1247	whddud91@naver.com
	김 진 욱	건설소방위원회	010-3119-5595	sincere-wook@daum.net
	도 기 욱	기획경제위원회	010-6424-2233	sangdo613@hanmail.net
	박 미 경	행정보건복지위원회	010-8532-9373	pmk2420@hanmail.net
	박 영 환	기획경제위원회	010-7722-9002	bull01000@hanmail.net
	박 채 아	문화환경위원회	010-3323-7938	tax8335@nate.com
	배 진 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010-8707-9445	jinsukid@hanmail.net
	이 춘 우	농수산위원회	010-7181-7181	yc70@hanmail.net
	정 세 현	교육위원회	010-2504-8938	jo3838@hanmail.net

※ 외부전문가는 추후 별도 위촉예정임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소관부서 : 의회사무처)

(제 정) 2008. 7. 17 조례 제3052호
(일부개정) 2009. 4. 23 조례 제3099호
(전부개정) 2010. 11. 15 조례 제3222호
(일부개정) 2012. 5. 31 조례 제3334호
(일부개정) 2013. 11. 11 조례 제347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도정발전과 관심있는 분야에 관하여 의원 입법 및 정책대안 개발 등의 입법정책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의정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입법 및 정책대안개발을 위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2. 도민의 입법청구에 관한 사항의 검토·자문
3. 위원회 소속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의 등록·운영 심의
4.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의정활동에 관한 연구과제 검토와 시행중인 정책의 연구·자문
5. 우수 의원연구단체의 선정 <신설 '13. 11. 11>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13. 11. 11>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연구단체 등록 시까지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각 상임위원회의 장이 추천한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각 2명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3명
3. 각 연구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외부전문가(이하 “외부전문가”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단, 외부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소관 연구단체의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기간 종료 시까지로 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회의는 회기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연구단체의 대표를 참석시켜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 등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단체)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위원회에 의원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연구단체를 둔다.

② 연구단체는 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각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개정 '12. 5. 31>

③ 각 연구단체는 대표를 두어야 한다.

제9조(연구단체의 명칭) 각 연구단체는 연구의 취지에 적합한 단체명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단체의 등록) ①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 연도

10월 25일까지 등록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하여 심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연구단체의 대표는 소관 연구단체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취소) 위원장은 소속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위원장의 승인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나 다음연도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3. 그 밖에 연구단체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연구활동계획서) ① 연구단체는 매 연도 10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연구활동 계획서와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연구주제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연구단체에 심사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2. 5. 31>

제13조(연구단체 운영) ① 연구단체는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 ② 연구단체는 목적 달성을 위해 토론회, 간담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③ 연구단체 대표는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외부전문가 1명을 연구단체의 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전문가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단,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12. 5. 31>
- ⑤ 외부전문가는 해당 연구단체와 공동으로 연구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2. 5. 31>

제14조(연구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15조(연구기간) ① 연구활동기간은 연구활동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다음연도 10월말까지로 한다. 단, 위원회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12. 5. 31>

-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이 종료되면 매 연도 10월말까지는 연구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그 결과를 연구활동비의 사용내역과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연구단체는 사용하고 남은 연구활동비가 있으면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16조(연구결과물의 제출)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연구용역) ① 위원회는 연구활동결과보고서의 심의결과에 따라 전문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의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건의된 연구주제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처리) 위원회의 운영과 그에 속한 연구단체의 등록·관리 등에 관한 총괄 사무는 입법정책관이 담당한다. <개정 '12. 5. 31>
② <삭제 '12. 5. 31>

제19조(연구활동비)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2. 5. 31>
② 연구활동비는 연구에 필요한 비용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범위) 연구활동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강사료·전문가 등의 자문경비와 자료발간비 등
2. 그 밖에 세미나·공청회·심포지엄·간담회·토론회 및 설문조사 비용 등의 필요경비

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①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 활동과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1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2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발굴이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와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에는 토론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2. 5. 31>

제24조(우수연구단체 시상) <신설 '13. 11. 11>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 활동이 우수한 연구단체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신설 '13. 10. 31>

제25조(시행규칙 등) <개정 '13. 11. 1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3. 10. 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경상북도의회자문교수운영조례에 의거 위촉된 자문교수는 이 조례에 의거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09. 4. 23>

③(폐지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북도의회자문교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9. 4.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 단체구성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2.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4〉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0. 11. 15 규칙 제4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연구단체 심의)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의 등록·운영에 관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부전문가의 선정 및 위촉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 위촉)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 위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등록신청)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단체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변경사항 통보)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연구단체 소속의원 등의 변경사항 통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연구활동계획서 등의 제출)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계획 심사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연구활동결과 등의 보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결과보고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연구단체의 등록부) 입법정책지원팀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원고료 등) 각 연구단체에 소속된 외부전문가가 연구주제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위원회에 연구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여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위 축 장(안)

○ ○ 대 학 교
교수 ○ ○ ○

귀하를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 신청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취소)을 신청합니다.

1. 단체의 명칭 :
2.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비 고

3. 회원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본인 확인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연구단체 대표 ○ ○ ○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의원연구단체 변경사항 통보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단체의 명칭 :

☐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변동일자
대표자					
회 원 (의 원)					
회 원 (외부전문가)					

년 월 일

[통보인] 연구단체 대표 ○ ○ ○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년도 연구활동계획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2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단체의 명칭		
연구 내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연구 활동비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세부 산출내역 붙임) ※ 자료수집비, 인쇄비, 강사료, 회의비, 세미나비, 물품구입비, 전문가 자문경비 등
특기사항		

년 월 일

〔제출인〕 연구단체 대표 ○ ○ ○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

구 분	주 요 내 용	
연구단체명		
과 제 명		
연 구 목 적		
연구경비 신청내역	총 액	
	세 부 산출내역	「세부 산출내역 붙임」 ※ 자료수집비, 인쇄비, 강사료, 회의비, 세미나비, 물품구입비, 전문가 자문경비 등

붙임 : 연구활동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 활동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연구단체 대표 ○ ○ ○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아래 의원연구단체의 ○○년도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단체의 명칭		
대표자성명		의원
심사 결과	심사 내용	
	연 구 활동비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인)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단체의 명칭			
연구 내용	당 초	연구주제	
		연구목적	
	변 경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 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 구체적으로 기술)
연구활동비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특기사항			

년 월 일

[제출인] 연구단체 대표 ○ ○ ○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단체의 명칭				
연구내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비	수령액	금	원	
	집행액	금	원	
	잔액	금	원	
	집행내역	자료수집 및 조사비	금	원
		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	금	원
		전문가 활용 경비	금	원
		기 타	금	원
특기사항				

- [붙임] 1. ○○년도 연구활동결과 최종보고서 3부.
2. ○○년도 연구활동비 정산서 3부.

년 월 일

[제출인] 연구단체 대표 ○ ○ ○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부

[illegible]

Note

Note

Note